

# 금연구역 흡연자 과태료 감면제도 안내



## 금연교육 및 금연지원서비스

50% 감면  
금연교육 이수



### 온라인 금연교육

- 온라인금연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  
과태료 감면 교육 3차시 이수(총 3시간)  
주소 : <http://lms.khealth.or.kr>
- \* 모바일교육 신청 및 수강 가능

### 오프라인 금연교육

- 인근 보건소에서 3차시 이수(총 3시간)
- 해당 기관에 교육 일정, 장소 등 문의

100% 면제  
금연지원서비스 참여 (4개 중 택1)



### 보건소 금연클리닉

- 3개월 이상 등록 유지, 4회 이상 대면상담
- 인근 보건소 금연클리닉에서 등록

### 전문치료형금연캠프

- 캠프 수료 후 (5일) 3개월 이상 등록 유지,  
7회 이상 상담 (5일 캠프 중 5회, 캠프 종료 후 2회)
- 금연두드림 홈페이지 내 금연캠프 제공기관안내  
참고 후 등록

### 병의원 금연치료

- 8~12주 과정 이수
- 금연두드림 홈페이지 내 병의원 기관안내  
참고 후 등록

### 금연상담전화

- 100일 프로그램 이수(11회 이상 상담 진행)
- 금연상담전화 1544-9030로 전화 등록

금연구역 내 흡연자로 과태료부과 대상인 자가 금연교육  
또는 금연지원 서비스를 이수할 경우 과태료가 감면됩니다.

\*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('19.12.3.), 시행('20.6.4.)



## 금연구역 흡연자 과태료 감면 절차



1

### 교육 및 금연지원서비스 신청서 적발 보건소에 제출

과태료 부과 처분 의견제출 기한 내 원하는 교육 및 금연지원서비스 신청서 제출  
(방문, 우편, Fax 등)

- ※ 우편 접수는 의견제출 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
- ※ 과태료 납부 후 감면 신청 불가, 감면 프로그램 선택 후 신청내용 변경, 중복적용 불가
- ※ 최근 2년간 과태료 감면제도에 의한 감면을 2회 받은 자와 과태료를 체납중인 자는  
적용 제외, 유예기간 중 금연구역에서 흡연행위 적발 시 중단
- ※ 의견제출 기한 내 신청서 미 제출시 신청 불가

2

### 금연교육 이수 또는 금연지원서비스 참여

- ※ 교육 및 금연지원서비스 신청서 미 제출시 서비스 이수하여도 감면적용 불가  
(서비스 신청서 먼저 제출 필수)

※ 금연교육 이수와 금연지원서비스 참여 중 한가지만 선택

3

### 교육 또는 서비스 이수 후 과태료감면신청서, 이수확인서를 적발보건소에 제출

금연교육 신청서 제출 후 1개월, 금연지원서비스 신청서 제출 후 6개월 이내  
감면신청서와 이수확인서를 적발 보건소에 제출 (방문, 우편, Fax 등)

※ 이수 후 각 이수 기관에 이수 확인서 요청



보건복지부



한국건강증진개발원  
국가금연지원센터